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48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출일자 : 2022년 8월 29일
- 라. 회부일자 : 2020년 9월 02일

### 2. 제안이유

- 가. 민선8기 서울시정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 변경 및 부서 간 기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19. 3월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상 해당법률 인용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직개편으로 인한 변경사항 반영
  -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위임사무의 주관부서를 조정하고 개정된 직제순서 반영
- 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의 자치구 위임사무 중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소관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관련 인용조항 수정(「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 제82조)

####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주관부서 변경과 부서 간 기능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임 관계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됨.

##### 나.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재분류(안 별표)

- 개정안은 민선 8기 시정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2022.8.8.) 사항을 반영해 주관부서의 명칭과 직제순서, 위임사무의 주관부서를 변경함.

##### (1) 주관부서 명칭 및 직제순서 변경

- 조직개편을 통해 ‘푸른도시국’이 ‘푸른도시여가국’으로 명칭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행정국’, ‘도시계획국’을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직제 순서에 맞춰 변경함.

(2) 실·국 간 위임사무 변경

- 방제비용 부담통지서 교부와 도로관리,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사료 제조업에 관한 사무의 실·국 간 주관부서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함.

< 실·국 간 위임사무 변경 >

주 관 부 서				사 무 명
현 행		변 경		
실·본부·국	부서	실·본부·국	부서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1. 방제비용 부담통지서 교부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1. 도로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고속도로 및 시청앞 광장 제외)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1.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2. 사료제조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3) 실·국·본부 내 위임사무 변경

- 요보호아동 보호조치와 아동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사무가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에서 아동담당관으로 이관되는 등 실·국·본부 내 위임사무 변경사항을 다음의 <표> 와 같이 반영함.

< 부서 간 위임사무 변경 >

주 관 부 서			사 무 명
실·본부·국	현 행	변 경	
	부서	부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아동담당관	1.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2. 아동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주 관 부 서			사 무 명
실·본부·국	현 행	변 경	
	부 서	부 서	
			폐쇄 등
노동·공정·상생 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1. 협동조합 설립 등 신고 및 관리 업무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시정연구담당관	1.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임용(다만, 정직, 해임, 파면은 제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22.1.1. 개정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기후환경정책과	1.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과 등록에 관한 사무
	대기정책과	생활환경과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사무
	차량공해저감과	대기정책과	1. 자동차배출가스 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 2. 교통소음·진동의 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스마트건강과	1.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의 과태료 부과·징수(「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조 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관리가 위 임된 도시공원은 제외함)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주택정책과	1. 민영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이행, 취소 등 2. 관리자의 지정·보고, 관리자 교체· 감리업무 지정 제한 등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도시정비과	1.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행위허가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치수안전과	1. 물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하천관리과	치수안전과	1. 국가하천 및 청계천 제외지를 제외한 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 2. 국가하천을 포함한 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다만, 청계천 제외 지는 제외한다) 3. 하천 국유화에 따른 조치(지목변경, 등기말소의 촉탁 관리형 명칭 첨기)

#### (4) 수임기관 명칭 변경

- 조직개편을 통해 공원녹지사업소가 공원여가센터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

#### < 수임기간 명칭 변경 >

실·본부·국	부 서	사 무 명	수임기관	
			현 행	변 경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3. 관할 구역내 폐기물 무단 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한강사업본부장, 관할공원녹지 사업소장	한강사업본부장, 관할공원여가 센터소장
푸른도시여가국	조경과	2. 세종대로(광화문삼거리~대한문 앞)의 녹지대의 설치·관리	중부공원녹지 사업소장	중부공원여가 센터소장
		5. 녹지활용계약에 관한 다음의 사무	관할 공원녹지사업소장, 구청장	관할 공원여가센터소장, 구청장

#### 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인용조항 변경(안 별표)

-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의 근거 법률인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2019.3.28.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함(제28조 → 제82조).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인용 조문 변경 >

주관부서	현행		변경	
	사무명	근거법령	사무명	근거법령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1.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다음의 사무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5항	1.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다음의 사무	좌동

	나.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28조의 승강기관리 주체에 해당하는 사항)		나.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82조의 승강기관리 주체에 해당하는 사항)	
--	---	--	---	--

-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의 변경은 해당사무의 변동이 없어 내용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법률 개정 이후 3년이 지난 점을 감안하면 후속 입법 조치에 미흡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됨.

#### 라. 종합의견

-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른 주관부서 조정과 부서 간 기능조정 변경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임사무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고 필요함.
- 다만,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의 위임사무 중 “사료제조업에 관한 사무 중 휴·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는 「사료관리법」의 개정(2019.2.1.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제8조제4항 → 제8조제6항)이 변경되었으므로 수정이 필요함.

###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개정안	□ 푸른도시여가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동물보호과	1.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2. 사료제조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휴·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마. ~ 차. (현행과 같음)	○ 「축산법」 제12조  ○ (현행과 같음)  ○ 「사료관리법」 제8조제4항  ○ (현행과 같음)	구청장          구청장
수정의견	□ 푸른도시여가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동물보호과	1.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2. 사료제조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 바. (개정안과 같음)  사. 휴·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마. ~ 차. (개정안과 같음)	○ 「축산법」 제12조  ○ (개정안과 같음)  ○ 「사료관리법」 제8조제6항  ○ (개정안과 같음)	구청장          구청장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용우	02-2180-8062